상호협력평가 세부평가기준 개정(안)

13 민간공사에서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임금지급 실적 (최대3점 기점)

평 가 항 목	평 가 기 준				
8785	대 기 업	가점 중소기업		가점	
가. 민간공사에서 원수급인이 전자대 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 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실적 △평가산식 = [(임금지급한 공사현	(1) 70% 이상	+ 3.0	1) 60% 이상	+ 3.0	
	(2) 60%이상~70%미만	+ 2.5	2) 50%이상~60%미만	+ 2.5	
	(3) 50%이상~60%미만	+ 2.0	3) 40%이상~50%미만	+ 2.0	
	(4) 40%이상~50%미만	+ 1.5	4) 30%이상~40%미만	+ 1.5	
│장수/전체 민간공사 현장수) ×	(5) 30%이상~40%미만	+ 1.0	5) 20%이상~30%미만	+ 1.0	
(대금지급개월수/공사기간개월수)×100)]	(6) 20%이상~30%미만	+ 0.5	6) 10%이상~20%미만	+ 0.5	

1) '임금지급실적' 판단기준

- 대상공사에 대해 원수급인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협력업자의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실적으로 평가
- 평가산식에 따른 실적비율(백분율)에 따라 '가점' 부여

2) '대상공사' 판단기준

- 당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협회에 제출한 모든 '민간공사' 중 원도급 공사금액이 5천만원 미만 또는 원도급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제외
- (민간공사 인정범위)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 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주한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
- (공동도급) 대표사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임금을 지급한 경우, 구성사도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

3) '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' 판단기준

- 이하의 기능을 갖춘 시스템이어야 하며, 대한건설협회는 필요한 경우 종합건설업자가 활용하고 있는 전자적 대금지금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음
 - ▶ **종합건설업자가 지급한 임금은 건설근로자 계좌로 송금만 허용**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, 협력업자의 계좌를 통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에 대해 협력 업자의 **인출 제한**기능을 갖출 것 (에스크로계좌 등 활용)
 - 다만, 협력업자 동의하에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 에스크로계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근로자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도 실적으로 인정
 - ▶ 종합건설업자가 지급할 근로자 임금에 대해 협력업자의 대금청구 및 승인기능이 있어야하며, **종합건설업자 및 협력업자가 청구・승인 및 지급을 실시간 확인 가능**해야함
 - ▶ 근로자에게 문자 등으로 임금 지급 등을 **알리는 기능을** 갖추어야 함

4) 평가산식 상세내용 (※자세한 내용은 예시참조)

②대금지급시스템 활용하여 임금지급한 민간공사 현장수 ①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× ④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임금지급한 개월수(평균값) ③대금지급시스템 활용 현장의 공사기간 개월수(평균값)

- 현장수(①,②)는 당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협회에 제출한 국내 민간공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'18년 실적분에 대해서는 '18.5.1 이전 준공현장 제외
- 개월수(③,④)는 평가대상년도 기간(1.1~12.31)내에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, 협력업자의 건설근로자 임금을 지급한 **각 현장별 개월수를 누계**하여 그 **평균값**으로 함. 단 '18년 실적은 '18.5.1일 이후 기간만 개월수에 반영
- 공사기간개월수③은 당년도 **협회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제출한 자료의 계약 연월, 준공(예정)연월을 기준으로 계산**하되 계약연월이 평가대상년도 기간(1.1~12.31)이전이면 1.1일부터, 준공(예정)연월이 평가대상년도 기간(1.1~12.31)이후이면 12.31까지로 함
- 임금지급한 개월수④는 임금지급 대상월(=기성월)을 기준으로 개월수를 누계하되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대상월의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
- 평가산식에 따른 실적비율(백분율)은 소수첫째자리(미만절사)까지 산출

5) 사실확인을 위한 협회 제출서류

- ①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화면캡처 출력물 (종합건설업체명, 현장명, 임금지급 대상월, 월별지급일자 등 포함)
- ©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(공동도급의 구성사로 참여한 경우, 대표사가 전지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경우에 한함)
- ☞ 현장별로 ①,Û을 1set로 제출

예시

◇ 2018년도 3개 민간공사 현장이 있는 경우

	공사기간		2018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임금자급			
공사명	계약년월 ~ 준공예정년월	개월수	활용 여부	임금지급 대상월	(임금지급 대상월별) 최초지급일	개월수
A 현장	17.02~19.02	8개월	활용	1~12월분	(1월분) 18.02.10 (12월분) 19.01.25	8개월
B 현장	18.06~20.04	7개월	활용	7~12월분	(7월분) 18.07.25 (11월분) 18.12.05	5개월
C 현장	18.10~19.08	3개월	미활용	_	_	_

- ① 전체 민간공사 현장수: ▶ 3건 (A, B, C 현장)
- ②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 지급한 현장수: ▶ 271 (A. B현장)
- ③ 공사기간 개월수 (임금지급 현장에 대한 평균값): ▶ 7.5개월 = (8개월+7개월) / 2
-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<u>A현장</u>은 공사기간은 당년도분만 포함하므로 $18.1 \sim 12$ 월까지 12개월이나 '18년실적은 5월 이후만 포함되므로 $5 \sim 12$ 월까지 8개월, B현장은 $6 \sim 12$ 월까지 7개월 (C현장은 제외)
- ④ 임금지급 개월수 (임금지급 현장에 대한 평균값): ▶ 6.5개월 = (8개월+5개월) /2
- 임금지급대상월을 기준으로 월별 지급일자가 확인된 현장만 포함하므로 A현장은 1~12월 분까지 12개월이 인정되어야 하나 '18년실적은 5월분부터 포함되므로 5~12월분까지 8개월, B현장은 7~11월분까지 5개월 (12월분은 지급일자 확인안되어 제외)

$$\triangle$$
 평가산식 : $\frac{22}{1.3} \times \frac{46.5}{37.5} \times 100 = 57.77777.... = 57.7$

⇒ 평가비율이 50%이상이므로 신청업체가 대기업이라면 2점, 중소기업이라면 2.5점 가점

참 고

1. 고시 개정 배경

- 정부의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예방대책 등을 담은 「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」('17.12.12)에 따라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시 '민간공사에서 원도급사가 **전자적 대금지금시스템**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임금을 지급한 경우 그 실적에 따라 기점을 부여
- * 「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」제2조 6항 및 제10조의2 신설 (18.5.1일 시행)

2.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흐름도



- * 1)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의 에스크로계좌를 통해 노무비 지급 : 1~6
 - 2)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의 임금청구에 따라 직접 근로자 계좌로 지급 : ①~⑥